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7. 21 선고 2021가단1053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빛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혜리

피 고 A

소송대리인 B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1. 체결된 매매계약을 14,267,93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267,9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C은 2015. 6. 24. D에게 경북 청도군 E 답 169㎡를 매도하였고, 2015. 7. 6. D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C에게 위 매매계약에 대한 양도소득을 이유로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1,647,410원을 부과하였다. C이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3. 18.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C에 대한 지방세 채권은 14,267,930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권리변동

1)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10.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C은 2016. 5. 9. 피고의 남편인 B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6. 5. 17. 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대한민국(처분청 울산세무서장)은 2020. 2.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3) B과 C은 2020. 4. 13. 위 1) 기재 가등기에 관하여 해제를 원인으로 가등기말소등기를 하였고, 2020. 4. 1.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울산등기소 접수 제36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위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4) 대한민국은 2020. 11. 1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5, 7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울산세무서에 재한 과세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행위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해 준 것이므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C에게 가지는 채권인 14,267,930원의 범위에서 이 사건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14,267,9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 전 C에게 지방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관련법리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선순위 채권에 따른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이나 압류등기가 마쳐진 선순위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책임재산의 범위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3196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살피건대, 을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한민국(처분청 울산세무서)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은 양도소득세 120,841,910원인 사실 및 이 사건 토지의 1㎡의 공시지가가 2020. 1. 1. 기준 3,45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와 가까운 2020. 1. 1.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7,265,700원(= 2,160㎡ × 3,450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세금미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세액이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를 현저히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성종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경상북도 울진군 F 답 2106㎡.

끝.

